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교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175

발의연월일: 2025. 2. 14.

발 의 자: 김교흥 • 유동수 • 이훈기

이학영 · 신영대 · 강득구

허종식 • 유준병 • 이용우

허성무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·관리하여야 하고, 대통령령이나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된 경우 소방본부장 등은 기존의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변경 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되, 예외적으로 의료시설 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대형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 소방안전기준이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시설 및 노유자시설에 부담이 되어 강화된소방안전기준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화재안전기준 등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의료시설 및 노유자시설 등에 해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함(안 제13조제6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	제13조(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
례) ① ~ ⑤ (생 략)	례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
	항 단서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
	적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
	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
	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
	<u>있다.</u>